

장애인 응시자 필기시험 편의제공 사항 안내

□ 편의제공 사항

구 분	장애유형		제출서류
활체어 전용책상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 (A3) 시험진행 시나리오	공 통		없음
시험시간 연장(1.5배)	지체(상지)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준 1~3급)	장애인등록증
	뇌병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준 1~3급)	장애인등록증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(기준 4~6급)	의사진단서
	시각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준 1~3급,2호)	장애인등록증
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(기준 4~6급) 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-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 -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	

※ 편의 제공은 장애인 응시자 본인에 한함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-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소견서,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 발급일자 :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

-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(아래 3가지)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에 대한 구체적 사항 명기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유형 및 정도	예 시
시각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0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